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1311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성철

변 론 종 결 2021. 4. 27.

판 결 선 고 2021. 5.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10. 3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채권 양도

- 1) 주식회사 D은 2017. 9. 11. C에게 3,100만 원을 대출기간 72개월,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25.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2) C이 위 차용금의 이자 등을 연체하자, 주식회사 D은 2018. 9. 28. 원고에게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10. 18.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3)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채권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9720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에 대하여 원고에게 33,275,284원 및 그중 29,313,367원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8. 12. 18. 확정되었다.
- 4) 2020. 5. 26. 기준으로 위 양수금채권의 내역은 원금 29,313,367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15,568,565원 합계 44,881,932원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 1) C의 부 E는 2019. 8. 2. 사망하였고, 망 E의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C, F, G, H가 망 E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 2) 공동상속인들은 2019. 10. 31.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9. 1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를 포함하여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회사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1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던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이를 소유하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 상속지분인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 10. 3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질적 상속포기라는 주장

피고는, 피고가 망 E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이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의미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는 그 주체, 방식, 내용, 성질 및 효력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망 이윤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인 사실이 명백하고, 피고가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되는 결과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와 같다는 점만으로 상속포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무자력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기여분 주장

피고는, 망 E는 30여 년간 당뇨 등의 심각한 지병이 있었고, 이로 인해 거동이 매우 불편했으며, 30여 년간 수시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반복하였는데, 피고가 망 E에 대한 치료, 병수발 등을 전적으로 도맡아 감당해 왔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피고의 망 E에 대한 각별한 봉양 등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서 특별한 부양행위란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신분관계로부터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부양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법률상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행위는 법적 의무의 이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은 배우자에게 더 높은 정도의 동거·부양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대신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동거·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측면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정하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우자의 통상적인 부양을 그와 같이 가산된 법정상속분을 다시 수정할 사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E가 당뇨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여러 차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망 E의 병수발을 맡아 그를 간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과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 E의 배우자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이재은

부동산 목록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 112㎡
 2. 서울특별시 성북구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 종.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4.63㎡ 같.

